

『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임대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신설
-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
 -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삭제
 -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따른 인적·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 삭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3조, 「민법」 제750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5. 검토의견

- 본 『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 -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 사항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위하여, 농기계 임대계약이 취소될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,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따른 인적·물적 피해 등에 대해 사용자 본인이 책임 진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됨.